

kotra 통상정보

제48호 [15-48] 2015.4.2 Biweekly Report

주간 포커스

한-뉴 FTA 정식 서명 & 한-베 FTA 가서명

주요국 통상 이슈

- I. FTA · 통상정책
- II. 통관 · 수입규제
- III. TBT
- IV. 기타무역장벽

통상 캘린더



Contents

1 주간 포커스

한-뉴 FTA 정식 서명 &
한-베 FTA 가서명

2 주요국 통상 이슈

I. FTA · 통상정책

■ FTA 등 지역협정

- TPP 수석협상관 회의 진전 없이 마무리
- 일본 기업, TPP에 대한 기대감 저조
- 한-미 FTA 발효 3주년

■ 무역 · 산업정책

- 인도, 보험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완화
- 일본, 우주 · 태양광 발전개발연구 전면 지원
- 미국, 새로운 친환경 제품 라벨 프로그램 발표

II. 통관 · 수입규제

■ 수입규제

-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일시금지

■ 세이프가드

- 우크라이나, 수입산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취소

■ 반덤핑 · 상계관세

- 한국,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식유 부분연신사 반덤핑 관세 부과 중지
- 브라질, 중국산 신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미국, 중국 외 4개국 특정 비코팅지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브라질, 중국 외 1개국 나선형 동파이프 덤핑 최종판정
- 남아공, 중국산 외바퀴손수레 덤핑 예비판정
- 브라질, 중국 외 4개국 알루미늄판 덤핑 최종판정
-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 조사기한 4개월 연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 미국, 호주산 실리망간 반덤핑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한국산 용접강관 상계관세 무효 · 터키산 용접강관 상계관세 유효 예비판정
- 호주, 중국산 알루미늄 차륜(휠) 반덤핑 · 상계관세 긴급재심 취소
- 미국,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덤핑 및 보조금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캐나다, 중국산 폴리실리콘 패널 반덤핑 · 상계관세 예비판정

III. TBT

■ 기술규제

- 일본-EU, 규제협력 관련 공동문서 발표

IV. 기타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 미국, 특정 장난감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특정 오디오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특정 전자 제품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3 통상 캘린더



주간 포커스

1 한-뉴 FTA 정식 서명 & 한-베 FTA 가서명

출처 : KOTRA 글로벌 윈도우 심층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본 원고는 KOTRA 글로벌 윈도우의 심층보고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내용을 발췌·취합한 것입니다.



’ 14년 말 타결된 뉴질랜드, 베트남 FTA가 각각 ’ 15.3.23(월) 정식서명, ’ 15.3.28(토) 가서명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타결한 FTA들이 발효를 위한 절차를 하나둘 진행함에 따라 발효 예정인 다수의 FTA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KOTRA는 뉴질랜드, 베트남 FTA 협정문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FTA에 따른 수출유망품목을 정리해보았다.

I.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1.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개요

□ ‘15.3.23(월), 양국 대표 한-뉴질랜드 FTA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향후 일정

- 정식 서명된 협정문의 국회 비준 요청 → 대국민 홍보와 보완조치 마련 → 국회 비준 동의 후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 → FTA 발효
-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는 FTA 국회 비준을 올해 6~7월, 늦어도 9월 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 언급해 한-뉴 FTA가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한-뉴질랜드 FTA 기대효과

-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 확대 기대

-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 부여기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

〈한-뉴 FTA 협상일지〉

일 자	주요 협상내용
2006.12	한-뉴 정상회담 시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합의
2007.2.7.-11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4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08.4.21.	한-뉴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 (서울)
2008.5.16.	한-뉴 정상회담 시 한-뉴 FTA 정부 간 예비협약의 개최에 합의 (서울)
2008.9.29.-30	한-뉴 FTA 1차 예비협약 (서울)
2008.11.26.-27	한-뉴 FTA 2차 예비협약 (웰링턴)
2009.1.16.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9.3.3.	한-뉴 정상회담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 한-뉴 FTA 개시 합의
2009.6.8.-12	제 1차 협상 개최 (서울)
2009.9.14.-18	제 2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09.12.14.-18	제 3차 협상 개최 (서울)
2010.5.12.-14	제 4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1.2.1.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개최
2013.12.3.	한-뉴 통상장관 회담 계기, 한-뉴 FTA 협상 재개 확인
2014.2.17.-21	제 5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4.3.26.-28	제 6차 협상 개최 (서울)
2014.6.8.-13	제 7차 협상 개최 (오克兰드)
2014.8.4.-8	제 8차 협상 개최 (서울)
2014.10.15.-16	제 9차 협상 개최 (서울)
2014.11.15.	한-뉴질랜드 FTA 타결
2014.12.22.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웰링턴)
2015.3.23.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서울)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한-뉴질랜드 FTA 협정 주요내용

① 상품 양허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한국 : 수입액 기준 48.3% 즉시, 61.8% 5년 내, 78.3% 10년 내, 96.4% 15년 내 관세 철폐
- 뉴질랜드 : 수입액 기준 92%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전품목 7년 내 관세 철폐

□ (뉴질랜드 측 시장개방)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뉴질랜드 내 여타국 경쟁제품과 동등한 여건 마련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컬러TV 등은 이미 무관세

- (타이어, 자동차 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마련
- (전자·일반기계) 세탁기(5%) 즉시 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는 3년 관세 철폐
- (상용차)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 (철강) 對뉴 주력수출품인 도금강판(5%)을 포함하여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 (섬유)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뉴측의 對중 양허수준보다 對한 양허수준이 대부분 1~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

- (기타)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5%)는 즉시 관세 철폐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유망

□ (한국 측 시장개방)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주요 민감품목(품목수 199개) 양허 제외
 -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 쇠고기 포함 민감 농림 수산물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② 서비스·투자

□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③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원산지규정에 합의
 - (농수산물)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
 - (승용차) 4단위 세 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직접법 30%/ 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
- (개성공단)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기로 합의

④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별도로 쇠고기 8개 세 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마진 산정시 ‘제로잉금지 원칙’ 적용 관행 확인,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⑤ 정부 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1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2억원) 이상으로 규정
 -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 * BOT(Build-Operate-Transfer) :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⑥ 농림수산 협력

-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비용은 공동 부담)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연구·훈련 추진(매년 최대 14명)
-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매년 최대 6명)
- (기타 협력) 수의역학 공동 워크숍 개최, 기타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 및 투자기회 창출 노력

⑦ 시청각 공동제작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분야의 對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⑧ 인력 이동 ※ 별도 서한으로 합의

□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개선,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일시고용 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현재 1,800명)하고,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

* (연수·교육기간) 3개월 → 6개월, (고용제한)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 → 정규직만 금지

- (일시고용입국*)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

－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인 비자 요건(건강, 신원요건 등) 충족 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

* 일시고용입국 :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산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한-뉴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 국 양 허		양 허 단계	뉴 질 랜 드 양 허	
주 요 품 목	품목수		품목수	주 요 품 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1,932	즉시철폐 (무관세)	4,207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7,160	즉시철폐 (유관세)	2,013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고, 버터, 기초화학품, 제재목, 펄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혼합(통조림 등),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960	3년 철폐	488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변환기, 조개, 토마토 페이스트, 초콜렛, 완두,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오징어	394	5년 철폐	275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키위	1	6년 철폐	-	-
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주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 (민어, 다랑어, 대구, 돔)	347	7년 철폐	273	자동차부품(방열기), 변압기, 합판,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치즈(기타/체다 치즈)	1	7년 철폐 (TRQ)	-	-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362	10년 철폐	-	-
버터	2	10년 철폐 (TRQ)	-	-
섬유판, 합판, 어류(명태, 가자미, 황새치, 참치, 대구, 갈치, 꽃게)	71	12년 철폐	-	-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	12년 철폐 (TRQ)	-	-
냉동크림	1	13년 철폐	-	-
조제분유	1	13년 철폐 (TRQ)	-	-
쇠고기, 식용설육(소), 동물의 위, 장(소의 것), 요구르트, 녹용(기타), 호박, 필터담배,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냉동), 완두, 어류(황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347	15년 철폐	-	-
치즈, 조제식료품	9	15년 철폐 (TRQ)	-	-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3	17년 철폐	-	-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닭고기(미절단/냉장), 오리고기, 상추, 마늘	57	18년 철폐	-	-
밀크와 크림, 합판	6	20년 철폐	-	-
호박(신선/냉장)	1	계절관세	-	-
녹용(전지)	1	세번분리	-	-
감자(기타)	1	세번분리/계절관세	-	-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기타곡분, 대두, 사료	12	10년간 50% 감축	-	-
탈전지분유, 연유, 혼합(자숙)	12	현행관세 (TRQ)	-	-
-	-	기타*	32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유당, 녹각, 단감, 고추, 인삼, 마늘(신선/냉장/건조), 사과, 배, 포도,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199	양허제외	-	-
	11,881	총합계	7,288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3. 한-뉴질랜드 교역 현황

□ 한-뉴 교역 현황

-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 수입대상국 ('13년 기준)
- '11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상승추세
- '12년 1억 2,700만 달러, '13년 9,600만 달러로 2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
- 한국의 對뉴 수출은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對뉴질랜드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5월)
총액	2,093	2,577	2,804	2,880	1,429
對뉴수출	918 (3.1)	1,103 (20.2)	1,465 (32.7)	1,490 (1.7)	776 (30.1)
對뉴수입	1,175 (33.7)	1,474 (25.4)	1,339 (-9.2)	1,395 (4.2)	653 (6.1)
무역수지	-257	-370	125	95	1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 품목

- '14.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0.1% 증가
-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 수출이 각 23%, 70% 성장
-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역시 크게 증가
-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등 일부 대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주요 對뉴질랜드 수출 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순 위	2012		2013		2014(9월)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휘발유	428,713	휘발유	419,639	휘발유	362,358
2	승용차	231,142	승용차	245,502	경유	240,014
3	경유	173,172	경유	224,559	승용차	202,059
4	철도차량	53,972	건설중장비	59,101	건설중장비	59,110
5	건설중장비	49,974	합성수지	49,867	합성수지	43,637
6	기타어류	45,788	기타어류	26,001	제트윙등유	35,858
7	합성수지	37,274	석도강판	25,357	동조가공품	33,100
8	석도강판	26,388	화물자동차	24,209	화물자동차	22,919
9	무선전화기	21,280	인쇄용지	21,656	기타어류	20,500
10	타이어	21,279	타이어	20,810	타이어	15,6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 품목

- '14.5월 기준, 對뉴질랜드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
- 원목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원자재 수입은 급증, 낙농품과 가축육류 수입은 '13년에 이어 감소추세

〈주요 對뉴질랜드 수입 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순 위	2012		2013		2014(9월)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원목	286,160	원목	347,124	원목	262,690
2	낙농품	176,545	낙농품	172,374	기타석유 화학제품	257,118
3	기타석유 화학제품	154,929	기타석유 화학제품	169,474	낙농품	105,497
4	가축육류	122,27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7,932	가축육류	98,104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7,303	가축육류	117,36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62,952
6	펄프	63,315	펄프	61,179	펄프	58,043
7	과실류	57,990	제재목	43,742	과실류	42,929
8	제재목	40,975	단백질류	37,000	단백질류	28,969
9	단백질류	39,589	과실류	34,629	제재목	22,381
10	고철	27,421	고철	21,649	고철	20,38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뉴 투자 현황

- 뉴질랜드로의 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됨
- 뉴질랜드 투자의 대부분은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는 이민 진출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임
-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

〈對뉴질랜드 투자 추이〉

(단위: 천불, ()는 신고건수, 신고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9월)	누 계 (~14.9)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	458 (5)	495 (3)	824 (-)	71,295 (-)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	23,255 (16)	13,378 (27)	78,457 (16)	494,841 (535)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4. 한-뉴질랜드 FTA 수출유망품목

	산업	품목명 (HS CODE)	기준 세율	양허 스케줄	'14 對캐나다 수출액 (증가율)	MCA 지수	유망사유
1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패드 및 슈 (8708.30)	5	3년 철폐	0.57 (9.06)	0.34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가격이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 시 가격경쟁력 제고
2		시동용 배터리 (8507.10) (8507.20)	10 /5	3년 철폐/ 즉시 철폐	0.08 (-10.69)	0.08	- 한국산 자동차 수입점유율 상승으로 관련 부품 수요 동반 상승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3	석유 화학	유기계면 활성제 (3402.20)	5	즉시 철폐	4.57 (-0.02)	1.51	- 뉴질랜드 내 다수의 세제 제조사가 있어 원료 수요 증가 -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하여 진출 여지 높음
4		PVC 랩 (3920.43)	5	즉시 철폐	0.27 (28.02)	0.74	
5	식품	인스턴트 라면 (1902.30)	5	즉시 철폐	4.01 (1.04)	2.18	-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인스턴트라면 등 일부 품목은 주류 식품 유통망에 진출하여 판매 중 - FTA로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 수요 증가 예상
6	기계	배전용 변압기 (8504.23)	5	7년 철폐	10.82 (069.12)	7.02	-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현지 바이어 수요가 높으며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7		중장비 부착품 (8431.41)	5	3년 철폐	0.62 (68.17)	1.87	-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8	건축 자재	철강제품 (7326.19)	5	7년 철폐/ 즉시 철폐	0.16 (-36.72)	0.29	- 뉴질랜드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건설자재 수요 증가 - 관세 철폐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단기간의 수출 증가요인은 낮으나 철강제품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대
9	섬유, 의류	양모사 (5107.10)	5	7년 철폐	0.88 (-56.94)	1.56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 뉴질랜드와 기FTA 체결국인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10	기타	사무용 의자 (9401.30)	5	즉시 철폐	0.18 (-21.05)	0.29	- 뉴질랜드 경기호황으로 신규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류의 수요 증가 - 바이어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II. 한-베트남 FTA 가서명

1. 한-베트남 FTA 가서명 개요

□ '15.3.28(토),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선언('14.12.10) 이후 기술협약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하였음.

□ 향후 일정

- 정식 서명 → 정식 서명된 협정문의 국회 비준 요청 → 대국민 홍보와 보완조치 마련 → 국회 비준 동의 후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 → FTA 발효
 - 3월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을 통해 협정 영문본(가서명본) 공개하였으며, 한글본(초안)은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 예정
 -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속한 발효를 목표하고 있음.

□ 한-베트남 FTA 의의

- 한국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
 -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
 - * 면·편직물, 소형가전,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를 획득
-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의 기업 경쟁환경을 개선하여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문화협력을 확산에 기여할 것임.
 -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와 지재권 보호 규범을 채택하고,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 협력 규정을 포함

〈한-베 FTA 협상일지〉

구 분		주요 협상내용
1차	'12.9.3~4 (서울)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2차	'12.5.22~24 (베트남 하노이)	- 우리측의 Text(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 VIP 방베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3.9월)에서 “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3차	'13.10.16~18 (부산)	-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4차	'14.3.12~14 (베트남 호치민)	-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5차	'14.5.20~23 (서울)	-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정식으로 합의
6차	'14.7.28~8.1 (베트남 호치민)	-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협상 개시
7차	'14.9.29~10.2 (서울)	-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 협정 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4.10월)시 “한-베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		
8차	'14.11.17~21 (베트남 다낭)	-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9차	'14.12.8~10 (서울)	-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 타결 선언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2014.12월)에서 “한-베 FTA 실질타결 선언”		
	' 15.1월~3월	- 기술협약, 법률검토
※ 한-베트남 FTA 가서명 (' 15.3.28, 서울)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한-베트남 FTA 협정 주요내용

① 상품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 협정

○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

□ (상품)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3%p) - 베트남 92.4%(+6.1%p)로 자유화수준 합의

* 괄호 안은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 대비 증가분을 의미

〈한-아세안/한-베 FTA 시장자유화율 비교〉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베트남 시장자유화율	- 수입액 기준 86.2% - 품목수 기준 87%	- 수입액 기준 92.4% (7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 - 품목수 기준 89.2% (상품 200개 추가)
한국 시장자유화율	- 수입액 기준 91.7% - 품목수 기준 91.3%	- 수입액 기준 94.7% (1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 - 품목수 기준 95.4% (상품 495개 추가)

- 베트남측은 이미 對한 수입의 86.3%(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7년) 철도차량 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 (10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 한국측은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 쌀(협정 대상 제외) · 고추 · 양파 · 녹차 ·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
 - (5년) 맥주, (10년) 열대과일 · 마늘 · 생강 · 돼지고기 등, (15년) 천연꿀 · 팔 · 고구마전분 등
- 對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1.4억불)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 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제공

* 초기 물량 10,000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톤까지 증량

② 서비스 · 투자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 채택,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 포함

- (건설)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
 - 도시계획 · 조정, 기타기계 · 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베트남 측 양허 개선 등
- (금융) 한국 금융업계의 현지진출 애로해소 위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금융서비스 위원회) 확보
- (통신) 한국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 · 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

□ (투자) 한-아세안 투자협정,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베트남 측 경험 부족을 감안, FTA 발효 1년 후 완결토록 하는 Built-in 조항 도입

③ 규범 · 협력 등

□ (원산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우리기업 부담 완화

-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 가당연유, 유당 등)
- (섬유 · 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 커튼, 모포 등)
- (기계, 전기 · 전자) 한-아세안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으로 합의 (예 : 세탁기, 냉장고 등)
-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의 편의 제고 (예 : 기어박스, 차축 등)

□ 무역구제

-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 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
 -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 기술장벽 (TBT)

- 전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한국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술규정 제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

□ 위생 및 검역 (SPS)

- 당사국간 SPS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회 모색, SPS 챕터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

-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에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보장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 *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
 - (특허권)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
 - (부정경쟁) 타인의 상표, 명성,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을 금지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규정
- (분쟁해결)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한-베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 국 양 허		양 허 단계	뉴 질 랜 드 양 허	
주 요 품 목	품목수		품목수	주 요 품 목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4	즉시철폐(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87	즉시철폐(유관세)	-	-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허(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곡수, 곡류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제품, 방어(신선/냉장), 넙치(냉동), 가자미(냉동), 피조개(신선/냉장), 갯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216	3년 철폐	16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등
저/고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찜, 두부,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동), 조제문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발부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8년 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기타), 호도(탈각/신선-건조), 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정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 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팔(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 (한) HS2012 10단위, (베) HS2012 8단위 기준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3. 한-베트남 교역 현황

□ 한-베트남 교역 현황

- 지난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 간 교역규모는 56배 이상 성장하여 '13년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
*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13, 억 달러) : ①싱가포르(326.4), ②베트남(282.6), ③인니(247.4)
- '13년 한국의 對베 수출액은 210.9억 달러(전년대비 32.2% 증가), 수입액은 71.8억 달러(전년대비 25.5% 증가)로, 139.1억달러 흑자 기록
*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는 증감률,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월)
총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24,957
對베수출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13,465 (39.5)	15,946 (18.4)	21,088 (32.2)	18,310 (4.4)
對베수입	1,392 (50.5)	2,037 (46.4)	2,370 (16.3)	3,331 (40.5)	5,084 (52.6)	5,719 (12.5)	7,175 (25.5)	6,647 (12.1)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1,66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소재 위주, 수입 품목은 자원 및 섬유·신발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
- '14.10월 기준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약 36.8% 차지
-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의류, 신발, 목재류, 무선통신기기, 기타섬유제품이며, 對베트남 수입의 약 46.4% 차지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순위	수출 ('14.10월)			수입('14.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509	△1.2	의류	1,908	39.5
2	무선통신기기	1,684	25.7	신발	427	30.7
3	합성수지	985	4.5	무선통신기기	277	47.2
4	편직물	803	4.6	목재류	261	81.8
5	철강판	759	△6.1	기타섬유제품	209	16.6
	총계	18,310	4.4	총계	6,647	12.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베트남 투자 현황

-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현재 3,983건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약 3,320여개 한국기업), 한국은 일본에 이은 제2위 투자국
 - * 세계 對베트남 투자국 순위 : ① 일본, ② 한국, ③ 싱가포르
-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동시에 한국의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334억 달러 투자 (누계, '14.10월, 베트남 통계청)
 - * 한국의 투자순위 : ① 미국, ② 중국, ③ 홍콩, ④ 베트남
-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
 -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92~ '00 → '06~ '10) : 경공업 36.4%p → 26.1%p, 1차금속 및 전기·전자 등 30.4% → 36.8%
- 對베 5대 투자분야는 제조업(76억 달러), 광업(33억 달러), 부동산업·임대업(25억 달러), 건설업(12억 달러), 금융·보험업(7억 달러) 순('13년 누계(신고), 수출입은행)
 - * 주요 투자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등
- 한편, 베트남의 對한 투자는 총 106건, 총 14백만 달러('14.6월 누계(신고))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對한 투자는 '05년 1.1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11년에 투자가 급증하여 5.0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

〈한-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신고 기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월)	누 계 (~ '14.9)
對베트남 투자	금액	2,780	1,913	964	2,147	1,511	914	1,455	933	18,187
	건수	839	826	643	763	723	739	1,014	595	8,746
對한국 투자	금액	0.5	0.4	1.0	0.8	5.0	1.7	2.1	0.8	14.6
	건수	7	9	13	15	15	14	7	3	107

* 對베트남 투자 : '68년~ '14.9월 기준, 對한국 투자 : '97년~ '14.9월 기준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4.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

□ 對베트남 수출유망품목

- 가전, 화장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유아용 분유 등

* 현지수요 증가품목, 고관세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

〈對베트남 수출유망품목〉

품 목 명	수입관세율	유망사유
고급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LED TV)	최고 30%	- 냉장고, 에어컨 등은 현지 조립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세인하로 고급 완제품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소형가전 (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최고 25%	- 가격대가 저렴한 소형가전은 TV·냉장고 등과 달리 브랜드 의존도가 낮아 우리 중소기업 제품 진출에 유리
화장품 (스킨케어)	10~20%	-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은 베트남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 중
유아용 분야	10%	- 매년 100만명의 신생아 탄생. 높은 젊은층 인구 비중과 가구소득의 증가,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장확대 예상
화물차 (5~20t)	10~50%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상용차 인기 증가 -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독보적인 지위 구축 가능
타이어 (버스 및 화물차용)	10~25%	- 아세안 제품이 5%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열위였으나, 관세인하로 시장 확대 가능
자동차 부품 (기어박스)	10~20%	- 한국산 제품은 안정적인 품질로 베트남 내 입지 확대 → 관세인하로 수출탄력 예상



I. FTA · 통상정책

□ (지역협정) TPP 수석협상관 회의 진전 없이 마무리

-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TPP 수석협상관 회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차로 진전 없이 마무리
 - (내용)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지적재산권 분야 중 신약 발매 전 임상 시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간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임.
 - 데이터를 빨리 공개하면 저렴한 후발 의약품 생산할 수 있지만, 신약 업체들의 투자 회수는 어려워짐
 - 주요 신약 메이커를 보유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빠른 정보 공개를 요구중

(출처 : 닛케이, 아사히 신문 ; 도쿄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일본 기업, TPP에 대한 기대감 저조

- 일본 기업들의 TPP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됨
 - (내용) 일본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400개사 중 TPP 참가로 인한 매출확대를 기대하는 업체는 25%에 불과
 - 절반의 기업이 TPP 참여할 경우 경쟁업체와의 서비스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
 - 운송용 기계 및 석유업체는 TPP 체결시 관세철폐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가능
 - TPP 협상의 걸림돌은 자동차 분야와 농산물 5개 분야의 보호수준임.

(출처 : 닛케이, 아사히 신문 ; 도쿄 무역관 종합)

□ (지역협정) 한-미 FTA 발효 3주년

- 한-미 FTA가 발효 이후 3년간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며, 교역 규모 증대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함
 - (내용)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6.2%로, 기타 발효된 FTA 전체 수출 활용률 보다 높은 편임.

〈우리나라 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

	발효 1년차('12)	발효 1년차('13)	발효 1년차('14)	전년대비 증감폭(%)
전체	69.4	77.0	76.2	△0.8
대기업	75.9	85.1	85.3	0.2
중소·중견기업	63.7	69.8	69.2	△0.6

- ' 14년 한미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수출은 13.3%, 수입은 9.1% 증가하여 총 11.6% 증가
- (對미 FTA 혜택 품목) 자동차 부품이 7.2% 성장하는 등 ' 13년 대비 4.3%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12.6% 감소
- (對미 FTA 비혜택 품목) 자동차는 20.2%, 무선통신기기가 9.9% 성장하는 등, 미국의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 13년 대비 19% 증가
- 미국의 對한 직접투자는 ' 13년 대비 2.4% 증가한 3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국내 총 FDI 유입액의 19% 차지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인도, 보험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완화

- 인도 상원의회, 보험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를 26%에서 49%로 완화
 - (내용) 과거 정부의 정책 추진 이후 7년 만에 상원 승인을 받음
 -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포트폴리오투자(FPI)**의 상한을 최대 49%로 확대
-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 ** 포트폴리오투자 (portfolio investment) :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액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을 여러 종류에 분할하여 투자하는 것. FDI와의 주요 차이점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간주함.
- 투자 규제 완화로 해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약 32~40억 달러의 해외자본 유입이 예상됨.

(출처 : The Financial Express ; 뭄바이 무역관 종합)

□ (무역 · 산업정책) 일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강화책 발표

- 일본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강화책을 발표(3.12)
 - (내용) 전기 자동차 구입비용 보조, 충전기 구입비용 및 설치 공사비용 일부 보조, 고속도로 이용 실태 조사 실시 등으로 ' 14년 추가경정예산 중 약 3억 달러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투자하기로 결정
 - 기존 차량판매 비중을 ' 30년까지 30~50% 감소,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20~30%까지 확대

(출처 :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 ; 오사카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일본, 우주·태양광 발전개발연구 전면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 우주·태양광 발전개발 및 연구에 전면으로 지원하기로 결정(3.12)
 - (내용)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기를 전파로 바꾸어 무선으로 보내는 ‘무선송전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 내 최대 출력·최장거리 실험에 성공함.
 - * 무선송전기술 : 우주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펼쳐 지상으로 전기를 보내는 우주·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로, 송전선 부설이 곤란한 장소로 송전하거나 전기차 충전 등에 응용이 가능하여 지상에서의 송전실용화에 적용이 가능함.
 - 전자 레인지에 사용되는 발진기, 빔 보고제어 기술*, 송전한 전파를 한 곳에 모아주는 초점화 안테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함.
 - * 빔 보고제어 기술 : 전파 확산에 의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빔의 형태·방향을 제어함.

(출처 : 산케이신문 ;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

□ (무역·산업정책) 미국, 새로운 친환경 제품 라벨 프로그램 발표

-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존 친환경 제품 라벨을 대체할 새로운 ‘Safer Choice’ 프로그램을 발표(3.4)
 - (배경) 과거 15년 이상 운영한 ‘Design for the Environment(DfE)’ 프로그램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함.
 - (DfE의 문제점) ① DfE 로고 디자인이 제품의 뒷면에 부착되어 홍보기능을 제대로 수행못함. ② 로고에 삽입된 ‘U.S. EPA’ 라는 로고가 소비자에게 EPA가 보증하는 제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존재함. ③ 성능 측정 방법이 충분치 못하여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함.
 - (내용) EPA의 Safer Choice는 자발적 기준*으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인정받아 Safer Choice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이 체결된 제품에만 라벨 부착을 허용함.
 - * Safer Choice 기준 : 성능(performance), 패키징(packaging), 수소이온농도(pH),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신청이 가능함.
 - (Safer Choice 획득 절차) ①EPA 웹사이트에서 제품이 라벨 획득 가능한지 확인 ② 외부기관 의뢰를 통하여 제품의 구성성분 조사를 신청하고 모든 구성성분을 공개 ③ EPA 제품의 구성성분 평가를 통해 대체 가능 성분을 파악 ④ 조사기관에 리뷰 결과를 의논하고 자격요건에 맞을 경우 파트너십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의논함 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생산업체와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지며 라벨 사용이 허용됨

(출처 : 뉴욕 무역관 종합)

II. 통관 · 수입규제

□ (수입규제)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일시금지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차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3월 5일부터 45일간 수입 일시중지 (3.2)
 - (내용) 카자흐스탄의 연간 러시아산 석유 수입 가능량은 휘발유 110만 톤, 경유 76만 톤이며 올해 초 충분한 수입으로 인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임

(출처 : kazinform)

□ (세이프가드) 우크라이나, 수입산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취소

- 우크라이나 정부, '15.2.14일부로 수입산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취소 공고(3.9)
 - 해당품목 HS코드 : 8703.22-1000, 9703.23-1910
 - (' 11.7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3.3월) 최종판정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한국,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반덤핑 관세 부과 중지

- 한국 기획재정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에서 관세 부과 중지 공고(3.4)
 - 해당품목 HS코드 : 5402.46
 - (' 08.2월) 반덤핑 조사 개시, (' 11년, ' 14년) 반덤핑 일몰재심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브라질, 중국산 신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브라질 정부, 중국산 신발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공고(3.6)
 - 해당품목 HS코드 : 6402, 6405(6402.20-00, 6402.12-00, 6403.12-00, 6403.20-0제외)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미국, 중국 외 4개국 특정 비코팅지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ITC, 호주·브라질·포르투갈·중국·인도네시아산 특정 비코팅지가 미국에 산업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3.6)
 - － 제조업체 : United Steel사,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USW), Domtar사, Finch Paper LLC사, 미국 Packaging사, P.H. Glatfelter사(PA)
 - － 해당품목 : 특정 비코팅지(Certain Uncoated Paper)
 - － 해당품목 HS코드 : 4802.56.1000, 4802.56.2000, 4802.56.3000, 4802.56.4000, 4802.56.6000, 4802.56.7020, 4802.56.7040, 4802.57.1000, 4802.57.2000, 4802.57.3000, 4802.57.4000, 4802.62.1000, 4802.62.2000, 4802.62.3000, 4802.62.5000, 4802.62.6020, 4802.62.6040, 4802.69.1000, 4802.69.2000, 4802.69.3000, 4811.90.8050, 4811.90.9080
 - － 이번 판정으로 미국 상무부의 호주·브라질·포르투갈산 특정 비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중국·인도네시아산 비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여부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
 - － (향후 일정) 4월 16일 미국 상무부 보조금 예비판정, 6월 30일 미국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 및 보조금 최종판정, 8월 14일 ITC 보조금 최종판정, 8월 21일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 부과 명령 하달, 9월 14일 미국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 10월 28일 ITC 덤핑 최종판정, 11월 4일 상무부와 ITC,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브라질, 중국·멕시코산 나선형 동파이프 덤핑 최종판정

- 브라질 정부, ' 15.3.5일부로 중국·멕시코산 나선형 동파이프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공고(3.10)
 - － 해당품목 HS코드 : 7411.10-90
 - － 반덤핑 세율 : 1480.02~2129.08달러/톤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남아공, 중국산 손수레 덤핑 예비판정

- 남아공, ' 15.3.6일부로 중국산 손수레에 24주간 잠정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3.10)
- 해당품목 HS코드 : 8716.80-10

〈기업별 반덤핑 세율〉

(단위 : %)

기업명	반덤핑 세율
Qingdao Youhe handtruck사	32,32
Qingdao Wantai Special Hand Truck(China) 사	29,82
일반	

- (' 14.6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브라질, 중국 외 4개국 알루미늄판 덤핑 최종판정

- 브라질 정부, ' 15.3.5일부로 중국 · 홍콩 · 대만 · 미국 · EU산 알루미늄판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공고(3.10)
- 해당품목 HS코드 : 3701.30-21, 3701.30-31

〈기업별 반덤핑 세율〉

(단위 : %)

기업명	반덤핑 세율
Lucky Huaguang Graphics사	2,09
Agfa Wuxi Printing Plate사	
Chengdu Xingraphics사	
Chongqing Haufeng Printing Material사	
lpagsa Printing Equipment(Jiaxing)사	
Shanghai Strong State Printing Equipment사	
Shanghai Upg International Trading사	
Smart Equipments Limited사	
Zhejiang Konita New Materials사	
일반	2,35

- (' 14.2월) 반덤핑 조사 개시, (' 14.7월) 예비판정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 조사기한 4개월 연장

- 일본 정부, 중국산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TDI)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한을 '15.6.13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공고(3.11)
 - (' 14.2월) 반덤핑 조사 개시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미국, 호주산 실리망간 반덤핑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상무부, 호주산 실리망간에 대한 반덤핑 여부 조사 개시(3.12)
 - 제소업체 :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USW), Domtar사, Finch Paper LLC사, 미국 Packaging사, P.H. Glatfelter사(PA)
 - 해당품목* : 실리망간(Silicomanganese)
 - * 저탄소 실리망간 (HS코드 : 7202.30.0000)은 제외
 - 해당품목 HS코드 : 7202.30.0000
 - 반덤핑 세율 : 77.97%
 - (향후 일정) 4월 6일 ITC 예비판정, 7월 29일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 10월 13일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 11월 27일 ITC 최종판정, 12월 3일 상무부와 ITC,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상계관세) 미국, 한국산 용접강관 상계관세 무효 · 터키산 용접강관 상계관세 유효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용접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무효, 터키산 용접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유효 예비판정(3.17)
 - 제소업체 : American Cast Iron Pipe사, Energex, a division of JMC Steel Group사, Maverick Tube사, Northwest Pipe사, Stupp, a division of Stupp Bros사, Tex-Tube사, TMK IPSCO사, Welspun Tubular LLC USA사
 - 해당품목 : API 용접라인파이프* (Welded Line Pipe),
 -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24인치(609.6mm) 이하의 탄소 및 합금 라인 파이프
 - 해당품목 HS코드 :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7305.11.1060, 7305.12.1060

〈한국 및 터키산 API 라인파이프 보조금 예비판정 결과〉

(단위 : %)

국가	업체	보조금률(%)
한국	Nexteel사	0.47 미소마진 이하
	SeAH Steel사	0.52 미소마진 이하
터키	Borusan Mannesmann Boru Sanany ve Ticaret A.S.사	8.85
	Tosyalı Dis Ticaret A.S.사	3.76
	그 외 업체	4.36

- (향후 일정) 5월 14일 미국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 7월 28일 미국 상무부 보조금 최종판정, 9월 11일 ITC 보조금 최종 판정, 9.18일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 부과 명령 하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호주, 중국산 알루미늄 차륜(휠) 반덤핑 · 상계관세 긴급재심 취소

- 호주 정부, 중국산 알루미늄 차륜(휠)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 긴급재심을 취소한다고 공고(3.6)
 - 해당품목 HS코드 : 8708.70-91, 8708.70-99, 8716.90-00
 - (' 15.1월) 반덤핑 · 상계관세 긴급재심 조사 개시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미국,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덤핑 및 보조금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연태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덤핑 및 보조금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해당품목 : 대형 가정용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 LRW)
 - 해당품목 HS코드 : 8450.20.0040, 8450.20.0080, 8450.11.0040, 8450.11.0080, 8450.90.2000, 8450.90.6000
 - ' 12.8.3-' 14.1.31일 수입된 냉장고를 대상으로 한 재심 예비 반덤핑 세율은 삼성전자 · 대우전자는 82.41%, LG전자는 1.57%

- ' 12.6.5-' 13.12.31일 수입된 냉장고를 대상으로 한 재심 예비 상계관세율은 삼성전자 34.77%, 대우전자 81.91%
- 반덤핑 관련 기타 제조 및 수출업체들은 기존 11.80%의 현금예치율을 계속 적용함
- 예비판정 연방관보 게시일* 기준 120일 내에 연래최종판정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반덤핑 · 상계관세) 캐나다, 중국산 폴리실리콘 패널 반덤핑 · 상계관세 예비판정

- 캐나다 관세청, 중국산 폴리실리콘 패널에 반덤핑 · 상계관세 예비판정(3.6)
 - 해당품목 HS코드 : 8541.40-0020

〈기업별 반덤핑 세율 및 상계관세율〉

(단위 : %)

수출상	반덤핑 세율	상계관세율	종합임시세율
Canadian Solar Manufacturing (Changshu)사 Canadian Solar International Limited사	90.1	84.1	174.2
Changzhou Trina Solar Energy사	125.7	0.8	126.5
Hanwha SolarOne (Qidong)사	103.0	0.3	103.3
Hefei JA Solar Technology사	47.5	3.1	50.6
Jinko Solar사	110.7	1.1	111.8
Renesola Jiangsu사	9.1	0.04	9.14
Wuxi Taichen Machinery & Equipment사	25.9	1.8	27.7
Wuxi Suntech Power사	202.0	0.5	202.5
Zhejiang Jinko Solar사	114.2	1.7	115.9
일반	202.0	84.1	286.1

- (' 14.12월)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 개시

(출처 : 베이징 무역관 종합)

Ⅲ. TBT

□ (TBT) 일본-EU, 규제협력 관련 공동문서 발표

- 일본-EU, 로봇·화학·자동차 등 12개 분야*에 대한 규제협력 관련 공동문서 발표 (3.17)

* 로봇, 화학,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 자동차, 부쟁광물, 에코 디자인, 건축, 자원효율성, 의료기기, IT 및 제조, 강제 현지화 조치, ICT 및 개인정보 보호 등

- (배경) ' 14.5월 정상회담 시 논의가 된 이후 EPA협상 및 산업정책대회를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 15년 말 이후 순차적으로 규제를 통일할 예정
- EU 역내 소재한 일본 기업이 일본에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유럽 고객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됨.
- (규제협력에 따른 3가지 혜택) ① 국경 내 장벽 논의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② 규제 및 기준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 국제 규제 및 기준 개발과 실행에 모멘텀 제공

〈주요 분야별 협력 내용〉

분야	협력 내용
로봇	○ 제품 인증의 단일화 가능성 모색을 위한 워킹 그룹 설치 가능 ○ 현존하는 기술규격 고려
화학	○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 양국 평가 기관이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옴. - 특히 나노 물질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해서는 OECD 등 국제 규제 트렌드를 준수하면서 협력의 가능성 모색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이전 - 관련 규제 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국간 워킹 그룹 협의 시 산업계 대표 참여 제안
국제표준화(GHS)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	○ 양국은 2015-2016년간 수행되는 UN GHS(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가연성 가스 분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자동차	○ 양국은 수소 및 연료전지 차량에 대해 2014년 10월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산업 정책대화의 워킹 그룹을 개최 ○ 양국은 자동차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속적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기로 함.
분쟁 광물	○ "분쟁 및 위험지역 광물 소싱에 관한 규제 초안" 관련, 양국은 적절한 때에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업체간 성실한 주의를 다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때에 의견 교환을하기로 합의

(출처 : 3/18 경제산업성, 경단련, 니혼게이자이 신문 ; 오사카 무역관 종합)

IV. 기타무역장벽

□ (지적재산권) 미국, 특정 장난감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ITC, 특정 장난감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여부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3.11)

* 관세법 제 337조 :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내용) 제소업체는 ITC에게 피소업체들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배제명령 또는 제한적 수입 배제명령과 함께 중지명령 하달을 요청
- (제소업체) 덴마크 LEGO A/S사, 덴마크 LEGO System A/S사, 미국 LEGO System사
- (피소업체) 미국 LaRose Industries LLC사, 캐나다 MEGO Brands사, 미국 Best-Lock Construction Toys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지적재산권) 미국, 특정 오디오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ITC, 특정 오디오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여부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3.12)

* 관세법 제 337조 :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내용) 미국 Andrea Electronics사는 ITC에게 피소업체 상품에 대해 수입 배제명령과 중지명령 하달을 요청
- (제소업체) 미국 Andrea Electronics사
- (피소업체) 대만 Acer사, 미국 Acer사, 대만 ASUSTek Computer사, 미국 ASUS Computer International사, 미국 Dell사, 미국 Hewlett Packard사, 중국 Lenovo Group사, 미국 Lenovo Holding사, 미국 Lenovo사, 일본 Toshiba사, 미국 Toshiba사, 미국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사, 대만 Realtek Semiconductor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 (지적재산권) 미국, 특정 전자 제품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조사 개시

- 미국 ITC, 특정 전자 제품 제조업체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여부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3.13)

* 관세법 제 337조 :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내용) 제소업체는 ITC에게 미국 Dell사의 제품에 대해 제한적 수입 배제명령과 중지명령 하달을 요청
- (제소업체) 네덜란드 NXP B.V.사, 미국 NXP Semiconductors사
- (피소업체) 미국 Dell사

(출처 : 워싱턴 무역관 종합)

03 통상 캘린더

2015/MARCH

한: 한국 미: 미국 WTO: WTO EU: EU
중: 중국 일: 일본 기타: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2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 브뤼셀)	3	4	5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5, 브뤼셀)	6	7
8	9 EU EU 의회 본회의 (3.9-12, 스트라스부르)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9-12, 스트라스부르) WTO 무역정책 리뷰 : 일본 (3.9-11) 기타 TPP 실무회의 개최 (3.9-15, 하와이)	10	11	12	13	14
15	16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3.16, 브뤼셀)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16-20, 브뤼셀)	17	18	19	20	21
22	2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3-24, 브뤼셀)	24 WTO 무역정책 리뷰 : 파키스탄 (3.24-26)	25 EU EU 의회 본회의 (3.25, 브뤼셀)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	2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26, 브뤼셀)	27	28
29	30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3.30-31, 브뤼셀)	31				

04 통상 캘린더

2015/APRIL

한: 한국 미: 미국 WTO: WTO EU: EU
중: 중국 일: 일본 기타: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1, 브뤼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13-14, 브뤼셀)	14	15 EU EU 의회 본회의 (4.15, 브뤼셀)	16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16, 브뤼셀)	17	18
19	20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20, 브뤼셀) EU EU 국제관계 위원회 회의 (4.20, 브뤼셀)	21 WTO 무역정책 리뷰 : 분쟁해결기구(DSB)회의 (4.21-23)	22 WTO 분쟁해결기구(DSB)회의	23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23, 브뤼셀)	24	25
26	27 EU EU 의회 위원회 총회 (4.27-30, 스트라스부르) EU EU 의회 본회의 (4.27-30, 스트라스부르)	28	29	30		